

# 무보증구매론 계약서

(구매기업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\_\_\_\_\_(이하 “구매기업”이라 함)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(이하 “물품 등”이라 함)을 판매한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 (이하 “원 약정서”라 함)에 추가하여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 6편 B2B 상거래정보」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

## 제 1 조(목적)

이 계약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“무보증구매론”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제 2 조(용어의 정의)

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“구매기업”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“판매기업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“벤더기업”이라 함은 판매기업(=1차 협력기업)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.
- “지급승인명세”(이하 “승인명세”라 함)라 함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,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.
- “지급승인금액”(이하 “승인금액”이라 함)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.
- “구매기업결제일”(이하 “결제일”이라 함)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,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.
- “선입금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, 제 8 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“선입금 등”이라 합니다.
- “벤더입금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 한 대금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“지급승인기간”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“선입금기간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, 선입금 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“일반거래”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 및 은행의 지급승인과 동시에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매매보호거래”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이전(인수) 절차 및 은행의 지급승인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기업인터넷뱅킹”이라 함은 기업뱅킹, CMS 등을 말합니다.
- “전자적인 방식”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, 선입금 등 무보증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.

## 제 3 조(이용한도 및 지급보증)

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전송하는 승인금액에 대하여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, 승인금액의 총 잔액은 원 약정서의 여신(한도)금액을 초과할 수 있으나, 판매기업(들)의 선입금 총 잔액은 원 약정서의 여신(한도)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## 제 4 조(승인명세의 전송 등)

승인명세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.

- 구매기업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만 승인명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
- 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승인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.

4. 승인명세 상 결제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.
5. 구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,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승인명세를 전송,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6.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"지급승인명세등록신청서" 및 해당 승인명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7.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
8.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

#### 제 5 조(지급승인)

-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지급승인에 대하여 판매기업에 대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이 지급승인을 함에도, 은행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지 않습니다.
- ③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에 따라 지급승인금액 전액에 대하여 판매기업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.
- ④ 은행은 지급승인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 6 조(승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)

- ①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에는 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, 지급승인 이후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, 전산조작 오류,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, 은행에 지급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승인명세의 판매기업, 승인금액, 결제일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,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합니다.

##### 1. 변경 가능한 세금계산서 정보

- 가. 세금계산서 종류
- 나.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
- 다. 공급받는자 상호명
- 라. 공급자 상호명
- 마. 품목명
- 바. 세금계산서 공급금액
- 사. 세액
- 아. 합계금액

##### 2.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이 가능한 경우

- 가. 승인명세 등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 가능
- 나. 당행의 승인명세 등과 연결이 되어있으나, 타행의 승인명세 등과 연결되어있지 않은 세금계산서 정보변경 가능. 단, 금융결제원에 집중된 세금계산서와의 정합성을 확인함
- 다. 당행 및 타행의 승인명세 등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변경 불가

- ② 구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하거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지급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, 은행은 승인명세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  - 가.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등을 실행한 경우
  - 나.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
- ④ 매매보호거래시 결제일 전 은행 영업일까지 권리이전(인수)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결제일에 자동으로 승인명세 및 지급승인이 취소됩니다.
- ⑤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전송 시,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**제 7 조(지급승인의 제한)**

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.

1.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
2. 본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
3. “신용정보 관리규약”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(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)가 등록된 경우
4. 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
5.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
6. 본 계약에서 정한 지급승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
7. 허위매출,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 용도 외의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등,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
8. “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정”이 체결되지 않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승인명세 전송하는 경우
9. 원 약정서 “제 6 조(감액,정지 조항)”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
10. 승인명세에 대하여 (가)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경우
11.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**제 8 조(신용공여 기간)**

구매기업이 이 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급승인기간은 최장 ( )일 범위내에서 하기로 합니다.(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최장 180일내에서 직접 기재합니다.)

**제 9 조(개별대출의 실행)**

- ①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판매기업이 선입금 등을 신청 시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」 을 준수하는 경우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또는 벤더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. 단, 판매기업(들)의 선입금 등 총 잔액이 원 약정서의 여신(한도)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입금할 수 없습니다.
- ② 판매기업의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신청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필수정보로 구성합니다.
- ③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 종류, 세금계산서 발행일,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,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, 세금계산서(승인)번호, 세금계산서공급가액, 세금계산서세액, 세금계산서합계 금액 및 품목으로 구성합니다.
- ④ 판매기업이 선입금 가능한 비율은 승인명세 건 별 최고 ( )% 이내로 합니다.(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선입금 가능비율을 직접 기재합니다.)
- ⑤ 선입금 등은 승인명세 전송 당일부턴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. 단, 승인명세 상 선입금 가능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선입금 가능일부터, 매매보호거래방식인 경우에는 구매기업의 권리가전(인수) 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.
- ⑥ 선입금은 승인명세 상 원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(한도)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.
- ⑦ 개별대출의 기한은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취급이 가능하며, 개별대출의 만기일이 약정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 시 취급이 가능합니다.

**제 10 조(대출의 이자)**

- ① 대출이자는 선입금 등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.
- ② 선입금에 따른 대출이자 는 판매기업이 부담하며, 대금 입금시 징구합니다.

**제 11 조(결제계좌의 지정)**

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상환 및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.

(※하나은행에 개설한 구매기업 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

**제 12 조(개별대출의 상환 및 구매대금의 지급)**

- ① 개별대출금의 상환자원과 구매대금의 지급자원은 은행영업시간까지 제 11 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② 개별대출금은 만기일에 제 11 조에서 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상환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③ 구매대금은 결제일에 제 11 조에서 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지급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④ 결제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은 개별대출금 상환을 우선 처리한 후 구매대금 지급을 처리하기로 합니다.
- ⑤ 개별대출금의 상환처리시 상환자원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, 선입금 건별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부분상환 처리 하기로 합니다.
- ⑥ 구매대금의 지급은 결제계좌에 결제할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되며, 결제대금이 당일 지급할 구매대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에 달할 때까지 승인명세 건별 전액결제만 처리하기로 합니다.
- ⑦ 결제일에 지급가능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미결제된 승인금액은 당일 이후에는 지급처리 되지 않고 익영업일에 자동으로 승인취소합니다.
- ⑧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계좌나 당좌대출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종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은행과 약정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,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
- ⑨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선입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.

**제 13 조(지급보류 등록)**

-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(가)압류, 가처분, 체납처분 (이하 “압류”라 함) 등이 구매기업에게 송달되는 경우, 구매기업의 신청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.
  - 1. 판매기업이 선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명세를 취소한 후 구매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.
  - 2. 판매기업이 전액 선입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하여 압류대상 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  - 3. 선입금 등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하여 지급보류 등록하는 경우
    - 가. 승인명세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 하기로 합니다.
    - 나. 지급보류 등록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 시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.
    - 다.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② 구매기업에게 압류가 송달된 경우 구매기업은 지체없이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, 구매기업이 통지를 지체하여 이 계약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경우 구매기업이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.

**제 14 조(수수료의 운영기준)**

무보종구매론 이용 시,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
(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에 “✓” 표시하고 수수료금액을 직접 기재합니다)

부담주체(택 1)	약정수수료	징수시기
<input type="checkbox"/> 판매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기업	원	판매기업부담시 : 대금입금시 차감 구매기업부담시 : 결제일에 징구

**제 15 조(이용시간)**

- 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 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중 가능하며,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서비스 종류	평일	토요일/일요일/공휴일
조회	24 시간	가능
판매기업 등록	08:00~22:00	불가
선입금 신청	08:00~19:00	불가

구매자료 승인/변경/취소 (당일전송 당일만기) (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)	08:00~22:00 08:00~15:00(EDI 14:00 까지) 08:00~20:00(EDI 16:00 까지)	불가
벤더입금	08:00~19:00	불가

-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. 단,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,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,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③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**제 16 조(계약의 체결 및 변경)**

- ① 구매기업은 이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성실하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,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③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**제 17 조(면책)**

-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
-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"제 15 조(위험부담·면책)"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 "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"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**제 18 조(계약의 효력)**

-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간까지 유효합니다.
-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이 계약서, 원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원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」의 순서로 하며,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- ④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
**제 19 조(관할법원의 합의)**

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**제 20 조(기타 특약사항)**

(서명날인)
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[은행]

주식회사 하나은행 \_\_\_\_\_(인)  
주 소 :

[구매기업(채무자)]

기업명 : \_\_\_\_\_(인)  
주 소 :

본인은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, 이 계약을 체결함.	구매 기업	(인)
--	----------	-----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